

## 한국의 개고기 식용 정책의 개선방향

안 용 근

충청대학 식품영양과

### The Direction of Reformation on the Edibility of Dogmeat in Korea

Yong-Geun Ann

*Dept. of Food Nutrition, Chungcheong College*

#### Abstract

Korea has its long history and tradition of eating dogmeat as food, but dogmeat was excluded from the animal procession law because of the criticism from foreigners, so it is being distributed without inspection of government. Government rejects people's demand for the legalization of edibility of dogmeat due to the protest from a few animal right activist groups, but 80% of nationals favor edibility of dogmeat, and urge the legalization of dogmeat, while 20 lawmakers in legislature submitted the bill to legalize the edibility of dogmeat, and judicature ruled dogmeat is edible meat. Westerners' criticism on dogmeat is, in part, from real protection of animal, but rather their intention seems to be from the racism of colors, the purpose to increase the export amount of beef, to divert the attention of utilizing the abandoned pet dog as animal feed, and to raise a fund for the animal right activist groups. Government distorts the public opinion of edibility of dogmeat, making use of the related animal protection group,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controlling over the animal protection law sides for the concerned groups opposing to the edibility of dogmeat, not for farmers. Furthermore, government has no intention of solving the problem of edibility of dogmeat and can't even propose the solution without presenting any adequate measure, worsening the situation. As a result, the issue of edibility of dogmeat is on the dead angle of sanitation, and wastes of dog slaughtering are polluting the environment.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legalize the edibility of dogmeat in order to distribute it sanitarily, to protect the environment, to increase tax revenues, and to secure the national pride. In additio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hould transfer the jurisdiction over the animal protection law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government should execute a reliable policy on the bases of objective and accurate investigation and statistics. Also, it is needed not only to set up the exclusive public bureau to make the edibility of dogmeat known worldwide and research institute, but also to launch the non government organization under the auspices of government. Then dogmeat can become the world renowned food as that of representing Korea.

Key words : dog meat, reformation on dogmeat.

#### 서 론

우리에게는 개고기를 식용하여 온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으며 그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있다<sup>1~76)</sup>. 그러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Yong-Geun An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ungcheong College, Wolgokri 330, Gangnae, Cheongwon, Chungbuk 363-890, Korea.

Tel : 019-486-8464, Fax : 043-230-2193, E-mail : annyg@hanmail.net

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서구문명 도입에 따른 애완견 문화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애완견문화는 전통문화의 황폐화에 따른 가족제도의 붕괴와 인간성 상실에 따른 결과로, 서구문명이 앞서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대가족 제도의 붕괴와 가정적 사랑의 결핍에 따른 속도로 파급되고 있다<sup>53)</sup>.

축산물 처리, 즉, 가축의 사육과 도축은 농림부 소관으로, 1978년 6월 13일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축산물 검사원이 개의 도축 및 검사를 하였으나, 개정 과정에서 동물 보호단체 등의 반대를 이유로 개와 개고기를 축산물 위생 처리법상 가축과 축산물에서 제외시켜서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다<sup>53)</sup>.

서울 올림픽 때 정부는 개고기 식용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한국산 상품을 불매한다고 하는 외국 동물보호론자들의 위협에 대도시에서 보신탕 영업을 못하게 하고, 시골에서만 영업을 하게 하였다<sup>53)</sup>.

이들 조처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문제를 낳았다. 첫째, 전통적으로 개는 가축이기 때문에 법에서 개를 축산물로 규정하여 오던 것을 일부 단체와 외국인이 반대한다고 불법화시켜서 절차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였다. 둘째, 개고기 식용이 불법이라면 못 먹게 하던가, 먹게 하려면 합법화시켜야 하는데 못 먹게 하지도 않고, 단속도 하지 않고 있어서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셋째, 정부는 개고기 식용에 대하여서는 문제화되는 것을 싫어하여 내버려두는 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이 정부는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으나, 해결할 의지도 보이고 않고,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개고기에 대한 연구도 영양학적 또는 약리학적 결과<sup>65~72)</sup>만 있을 뿐 역사와 전통, 국민의 의식에 대한 결과는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한국의 개고기 식용의 역사와 문화<sup>73)</sup>, 한국의 개고기 음식<sup>74)</sup>, 한국인의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인식<sup>75)</sup>, 한국인의 개고기 음식에 대한 인식<sup>76)</sup> 등에 대하여 연구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그에 이어서 한국의 개고기 식용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여 한국의 개고기 식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조사방법

고문헌은 한국고식문화집<sup>77)</sup>을 이용하였고, 기타 통계자료, 논문, 문헌, 보도자료에서 자료를 인용하였다. 중국의 개고기 식용관계 법률은 중국 <http://www.chinapet.net/old/law><sup>78)</sup>에 접속하여 출력한 자료를 번역하였다.

## 결과 및 고찰

### 1. 개고기 식용 현황

#### 1) 식용견 사육현황

한국에서 키우는 개는 2001년도에 2,506,369마리로, 한집에서 5마리 이상 키우는 개를 식용견으로 계산하면 1,420,046마리가 식용견이다. 한 마리에 20만원 정도로 가늠하면 총 2,840억 규모가 식용견 시장이다<sup>79)</sup>.

#### 2) 식용견 유통

개상인들은 식용견 30근짜리(18kg) 한 마리에 15~20만원 정도에 구입, 도축비 2만원 정도를 가하여 보신탕집과 건강원에 납품한다. 개상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고,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하며, 대형 업자들은 전국을 상대로 개를 수집하여 도축납품하고 있다.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남 양산에는 식용견 경매장이 있으며 하루 유통량은 각각 1,000마리 정도씩이다. 전국에서 하루 유통되는 양은 2만마리 정도이지만 반 정도가 식용이고 반은 중간단계의 유통이다.

#### 3) 도견장

전국에 도견장은 없다. 청주와 춘천은 소가축 도축장이 있다. 인천에서는 도축업자들이 개도축장을 허가받으려 하고 있다. 북제주군에서도 도축장을 세우려고 한 적이 있으나内外의 압력을 받아서 취소시킨 일이 있다<sup>80)</sup>. 그래서 대부분 무허가 시설에서 도축하고 있다.

#### 4) 보신탕집

보신탕집은 한국음식업조합의 회원이지만 분과가

Table 1. Breeding of edible dog in Korea(2001)

Breeding heads	5~9	10~19	20~39	40~49	50~99	100 or more	Total
Farms	46,987	18,370	9,053	1,798	3,479	2,651	82,338
Heads	290,047	232,614	227,382	73,505	219,134	377,364	1,420,046

없어서 통계가 없다. 전화번호부상에는 보신탕집 숫자가 4,000여 업소이다<sup>81)</sup>. 그러나, 보신탕집으로 등록하지 않고 보신탕을 파는 집, 여름에만 보신탕 파는 집 등을 합치면 약 1만 곳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국보신탕집 연합회라는 것이 있으나 회원 2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표성은 없다<sup>82)</sup>.

### 5) 건강원

전국의 건강원 숫자는 9천여 곳이다<sup>81)</sup>. 건강원은 손님이 주문하면 개와 약재를 고아서 추출하여 팩으로 하여 주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추출가공식품협회라는 단체로 정식 등록되어 중앙회와 시·도지부를 갖고 있다. 여기서는 전체 식용견의 1/3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 6) 개 수입

1997년도에는 총 498마리, 287,660달러에 불과하던 살아있는 개의 수입은 애완견 산업의 발달로 2001년에는 15,603마리, 금액으로는 1,931,468달리(약 20억 원)를 기록하여 4년만에 약 7배나 늘어났다<sup>83)</sup>. 수입하는 개는 모두 애완견이나 종견이다.

### 7) 개고기 수입

육류를 수입하려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처리가공법에 따라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장이 발행하는 합격증을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개고기는 식품공전에 등록되지 않아서 수입할 수 없으므로 개고기 수입 실적이 없다<sup>84)</sup>. 밀수도 있어서 1995년 부산세관이 적발한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개고기는 2건으로 24.6톤이다<sup>85)</sup>.

## 2. 행정부의 입장

### 1) 농림부

#### (1) 개고기 식용 법제화 반대

1999년 9월 27일 농림부는 국정감사에서 개고기 식용 법제화 논쟁과 관련, 혐오식품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포함시키면 외국 동물보호단체들이 월드컵 축구대회 참가를 거부하고 한국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성 및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개고기 식용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86)</sup>.

#### (2) 개고기 불법화 추진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도살된 개를 통째로 진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개고기 불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6월중에 입법 예고되어 국회에 상정한 뒤 2000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sup>87)</sup>이라 하였으나 실제는 2002년 9월에 입법 예고하였다.

### 2) 보건복지부

2002년 8월, 개고기 인터넷 판매사이트가 늘어나면서 동물보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단속하지 않는다고 고소한다고 하자 식약청에서는 폐쇄시키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반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세무사찰한다고 협박하여 폐쇄시켰다<sup>88)</sup>.

### 3) 외교부

일부 서구 국가가 개고기 식용을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하여 2001년 11월 29일 외교부 김경임 문화외교국장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동물보호법을 개정, 개에 대한 잔혹한 행위, 도살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고 합동단속반을 펼쳐서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였다<sup>89)</sup>.

### 4) 동물학대방지법 추진

2002년 6월 30일 정부는 소나 개에게 물을 먹이거나 심하게 구타한 뒤 도살하는 등 비인도적인 동물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한 단계 강화한 동물학대방지법 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소나 개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구타하여 잡는 행위, 공개적인 장소에서 개를 도살하는 행위, 개고기를 상점 밖에 내걸고 판매해 혐오감을 조장하는 행위이다<sup>90)</sup>. 동물보호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 5) 도견장 설립

북제주군(신철주 군수)이 국내 처음으로 추진해 온 도견장 유치 계획이 취소되어 개고기의 합법유통이 좌절되었다. 이유는 1996년 11월 27일 추진계획이 언론에 발표되자, 동물보호협회 등이 항의하였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제주도까지도 이를 반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80)</sup>. 춘천에서는 행정착오로 도견장을 허가하였다가 취소하였다.

### 6)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1996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가 개고기의 위생관리 책임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보건복지부

는 축산물식품 관리업무가 지난 해 농림부로 넘어간 만큼 가축에 속하는 개의 도축, 유통, 판매관련 위생관리 책임도 농림부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농림부는 84년 보건복지부가 개고기를 면단위 이하 지역에서만 조리 판매도록 식품위생법을 제정하고도 단속 소홀로 대중화한 만큼 (복지부 관할인) 식품위생법에 따라 복지부가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sup>91)</sup>.

### 3. 입법부의 입장

김홍신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7명은 1999년 9월 17일 개를 축산물가공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켜 개고기 유통을 합법화하고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공급하게 하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농림부는 개고기는 혐오식품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반대하였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심사소위는 심의를 보류하여 폐기시켰다<sup>92)</sup>. 김홍신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은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안을 2001년 12월 28일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다<sup>93)</sup>.

### 4. 사법부의 입장

서울지법 형사 항소4부(재판장 朴聖哲부장판사)는 1996년 11월 20일 당국의 허가없이 개고기를 도매공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된 윤모씨(3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개고기도 식육이라고 밝히고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식품위생법시행령 7조에는 개고기를 식육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식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더욱이 대부분의 개고기 도매업자들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영업해오는 것이 관행인만큼 윤씨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sup>94)</sup>.

### 5. 국민들의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의견

#### 1) 개고기 식용 찬성 의견

안은 전보<sup>53,75,76)</sup>에서 1,50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1,251명으로 설문자의 83%가 먹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남자는 92%, 여자는 68%가 먹어보았다고 하였다.

#### 2) 80%의 한국인 개고기식용 찬성

월간조선이 2000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0%의 한국인은 개고기 유통의 양성화에 찬성하였다. 개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의 74%도 개고기 유통 양성화

에 찬성하였다. 개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의 69%는 외국의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 우리나라의 보신탕 문화를 야만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5)</sup>.

#### 3) 한국여성들 보신탕에 대하여 관대

그랜드 백화점이 중복을 맞아 성인 여성고객 2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맞이 의식 설문조사'에서 성인 여성 응답자의 72%는 '자신은 보신탕을 먹지 않고 있으나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자유'라고 대답하고, 16%는 '보신탕을 먹고 있다'고 답했다. '야만적이다'라고 답한 여성은 9%였다<sup>96)</sup>.

#### 4) 애완개와 식용개의 구분

1999년 5월 데이콤이 천리안 인터넷 베이스를 통해 개를 식용견과 애완견으로 나눈 다음 식용견 고기만 식품화하면 어떨까 하는 데 대한 의견에 대하여 응답자 4,158명 가운데 2,344명(56.37%)은 찬성, 1,522명(36.6%)은 반대, 292명(7.01%)은 모르겠다고 답하였다<sup>97)</sup>.

#### 5) 사이버넷 온라인 여론 조사

보신탕을 합법화하자는 김홍신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인터넷 총참가자수 3,111명 가운데 73%인 2,280명이 찬성하였고, 27%인 811명이 반대의사를 냈다<sup>98)</sup>.

#### 6) Trend 네티즌 생각

1999년 8월 트렌드는 2,341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가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였고, 19%가 반대하였다. 개고기 식용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유통시켜야 한다'는 답이 38%로 가장 많았고, '소, 닭, 돼지고기 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답이 27%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이 87%의 찬성을 보였고, 20대는 79%, 10대는 71%가 찬성하였다<sup>99)</sup>.

#### 7) 텔레서베이 개고기 유통 양성화 찬성

동아일보가 1999년 5월 31일 한솔 PCS 가입자 265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고기 유통을 양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개고기가 위생적인 시설에서 도축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89.9%나 되었다. '동물학대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6.8%에 불과하였고, 모르겠다는 3.4%이었다. 개고기 유통 양성화는 20대 84.9

%, 30대 92.4%, 40대 이상 100% 등 나이가 많을수록 찬성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남성(88.2%)보다 여성(100%)이 더 높았다<sup>100)</sup>.

### 8) 유니텔의 설문조사

1998년 7월 11일부터 한달 반 동안 유니텔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 1,212명 중 개고기 식용 찬성은 78.6%(953명), 반대는 21.4%(259명)였다고 한다.

### 9) 네티즌 81% 문화간섭 압도적 반대

FIFA의 개고기 금지 요청에 대해 네티즌들은 압도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한국문화에 대한 간섭에 심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2001년 11일부터 13일까지 1,236명이 대답한 사커서베이 참가자의 81%(1,002명)가 FIFA의 ‘한국정부가 개고기를 단속해야 한다’는 요구에 반대한다고 답하였다. 찬성은 13%에 그쳤다<sup>101)</sup>.

## 6. 개고기 식용 반대 단체

### 1) 국 내

국내에서 개고기 식용 반대운동에 가장 앞장 서고 있는 곳은 동물보호 관련 단체이다. 그러나 멸종위기의 동물보다는 개고기에 대하여서만 관심을 가진 곳이 많다. 그리고 한국의 식용견을 보호하자면서 자기들은 비싼 수입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국의 누렁이살리기 운동본부 사이트에는 개고기식용 찬성자들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비난하여 놓았는데 첫번째가 북한의 김정일 주석으로 어긋난 방향을 보이고 있다<sup>102)</sup>.

### 2) 외국 단체

외국에서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가장 반대하는 곳은 서구의 동물보호 관련 단체이다.

1999년도에 김홍신 의원은 프랑스의 브리지도 바르도가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비난한데 대하여 항의 서한을 보냈다. 그리고 김의원이 다른 국회의원과 함께 개고기의 도축과 유통을 법제화하려 한 데 대하여 미국동물보호협회는 인터넷에 김홍신 의원의 사진을 게재하고 ‘악마(evil)’라고 표현하였다<sup>103)</sup>.

인터넷의 개고기 식용 반대 의견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며, 개 잡는 모습과 개 잡아놓은 사진으로 자극과 혐오감을 주려 하는 것이 많다.

이들은 FIFA,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 각부 장관, 대기업에 대하여 항의메일을 보내고, 한국상품 불매운동을 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아

도 한국인을 개고기 먹는 야만인으로 세계에 광고하고, 한국상품을 불매하라 하고, 월드컵을 보이콧하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반하므로 반한단체이다.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외국 단체는 국제동물보호기금, 세계동물보호협회(WSPA), 동물학대방지기구(RSPCA), 미국동물보호협회, 실험동물방지협회, Human Society International, Human Society US 등이 있다<sup>53)</sup>.

### 3) 개고기 식용 반대 논리

개고기 식용 반대의견은 ‘사람과 친구인 개를 왜 잡아먹는가, 개를 왜 잔인하게 잡는가, 세계 여론이 나빠진다, 먹고 살만하게 되었으므로 개고기는 안 먹어도 된다’ 등이지만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를 갖춘 자료는 없다.

개고기 식용 반대론자들은 한국의 개고기 식용은 전통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를 뒷받침할 논문이나 문헌이 없다. 그리고, 한국에서 개를 때려잡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논문이나 문헌, 증거가 없다. 반대로 한국의 개고기 식용은 전통이라는 논문과 책은 무수하다<sup>1~76)</sup>.

개고기 식용반대 여론도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부분 80%가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개고기 식용 반대론자들은 ‘국민의 대다수가 개고기 식용을 반대한다<sup>102)</sup>고 만 하지 믿을만한 통계자료도 없다.

## 7. 중국의 식용견 관련 법규

중국은 개고기 식용과 식용견 양식이 합법이다.

식용견 양식의 기본법으로서는 中國 國務院令의 種畜禽(家畜, 鳥類)管理條例와 種畜禽管理條例細則이 있으며, 種畜禽管理條例에서 개는 가축류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各縣과 市는 모두 食用犬과 愛玩用犬에 대한 管理規程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에서의 식용견 양식과 도축은 합법이다.

이들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양식업자 및 업체는 등록을 하고, 개도 등록을 하고, 개는 방역을 받고 면역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도시에서는 개의 사육을 제한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는 공공장소와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개가 밖에 나와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한다. 개사육장의 제한 및 규격 등도 있다. 개가 사람을 문다든지, 변을 배설하면 주인에게 변상과 함께 벌금도 물리고 북경에서는 개기르기가 거의 금지되어 있다.

昆明市의 犬類管理方法 (昆明市政府發布(1993) 78號)을 예를 들면 제1장 총칙에 식용견 양식은 총량 제

재, 엄중심사 인증의 원칙에 따라 관리를 강화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3장 9조는 식용견 양식장의 규격을 정하고 있다. 이외에 昆明市, 大連市, 江蘇省, 廣東省, 南京市, 北京市, 山東省, 遼寧省, 濟南市, 天津市, 泰安市, 太元市, 合北市, 合肥市, 湖北省, 廣州市, 南寧市, 西安市, 深圳經濟特區, 寧波市, 長春市, 合肥市, 杭州市, 呼和浩市 등의 지방정부들도 1983년에서 1997년 까지 개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sup>78)</sup>.

## 결과 및 고찰

### 1. 개고기 식용 비난의 근본 이유

서구의 개고기 식용 반대론자들이 비난하는 주장에는 논리성이 적다. 문화는 상대적이므로 다른 나라 음식문화를 비난해서는 안 되며, 동물성 식품을 상식하는 서구인들이 채식위주의 우리에게 동물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것도 논리가 맞지 않는다. 애완견을 작고 예쁘게 교배시킬수록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열화시키므로 개 입장에서는 애완견 수요자야 말로 학대자들이다. 한국은 식용견을 별도로 키우고 있으며, 한국의 개가 멸종하는 것도 아니므로 동물보호대상이 아니다. 서구에서는 나라마다 연간 수백만 마리의 개를 버리고 있으며, 기르던 개를 버려서 끓어죽게 하는 것은 개를 잡아먹는 것보다 더 비인간적이다. 나아가 자기네들이 버린 개나 늙은개를 도살하는 것은 안락사라고 하고, 한국에서 개 잡는 것은 학살이니 암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고통을 주면서 개를 때려잡는 방법은 수십년 전에 없어졌는데도 때려 잡는다고 전세계에 허위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는 자기들만 할 자격이 있고, 자기들 주장만 옳다고 한다. 이 같이 논리와 근거가 없는데도 한국의 개고기 식용만 주로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인종차별

프랑스 법원은 브리지도 바르도가 회교도 축제의식에서 양 잡는 것을 '회교도들의 태러'니, '회교도들이 프랑스를 피로 적신다'느니 하며 비난한 데 대하여 '인종차별, 증오, 인종간 폭력'을 조장한 혐의로 벌금 2만 프랑을 선고하였고, 인종차별 반대자들은 브리지도 바르도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프랑스에서 남의 나라, 남의 종교 의식을 문제삼는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자이며, 브리지도 바르도는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ront national)의 지지자로, 한국에 대해서는 개고기 식용을 비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개고기 식용문화

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타인종과의 차별을 주장하는 극우자들이다. 그러나, 다른 인종을 차별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개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sup>104)</sup>.

근세까지 백인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식민지를 만들고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짐승과 같이 다루었다<sup>105)</sup>. 백인들의 침략과 식민지 정책으로 중남북미 원주민의 혈통과 언어와 문화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대부분의 원주민을 학살하고 남아 있는 원주민의 90% 이상을 천주교도로 개종시키고 인종차별 및 문화 차별 정책으로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말살하여 획일적으로 서구문화화시켰다. 이런 결과로 현재 소수 백인 천주교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서 독점 통치를 하고 있다<sup>105)</sup>.

백인들이 개고기 식용을 공격하는 것도 동양인의 개고기 식용은 야만적이고 미개하며 이교도이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지 않는 백인이 동양인보다 우월하다는 인종차별을 바탕으로 한다.

#### 2) 쇠고기 수출

한국에는 식용견 140만 마리가 있는데 개고기를 못 먹게 하면 식용견을 기를 필요가 없어지므로 식용견 140만 마리의 목숨이 없어진다. 그래서 개고기를 못 먹게 하라는 것은 한국의 식용견을 멸종시키자는 일이고, 개고기를 못 먹게 하면 그만치 쇠고기 수입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개고기 식용 반대운동이 쇠고기 수출국들의 사주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 중국이나 북한은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여도 쇠고기를 대신 수입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비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축협은 1999년도에 축협이 축산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쇠고기 수입을 저지하자 미국이 한국에 압력을 가하여 정부가 축협을 없애려 한다고 항의하였는데 이것을 그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다<sup>106)</sup>

#### 3) 애완견 사료산업

서구인들은 한국에서 연간 140만 마리 정도의 개를 잡는 것은 학살이라고 한다. 반면 자기들이 연간 수천만 마리 잡는 것은 안락사라고 하며, 개를 잡아서 개사료까지 만들고 있다<sup>107)</sup>. 개 잡아서 개먹이로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 잡아먹는 것과 같이 악랄한 일인데도 한국만 비난하는 것은 개에 대한 관심을 한국에 돌려서 그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며, 사료업체는 개를 사료원료로 무료로, 안정적으로 얻기 위하여 경제력을 동원하

여 서구에서 개 잡는 것은 안락사이므로 당연하고, 한국에서 개 잡는 것만 학살이고 야만이라고 세뇌시킨다. 그래서 안락사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 서구인들은 거의 없다.

#### 4) 서구 동물보호협회의 기금 모금

서구의 동물보호협회는 자금이 떨어지면 개고기를 문제삼아서 기금을 모으는 일이 많으며, 한국의 개고기 식용이 집중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동물애호협회(HSUS)는 워싱턴에 본부와, 미전역에 10여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수의사, 자연생물학자, 변호사, 동물전문가등 직원 250여명이 근무하므로 운영 유지비가 매우 많이 듈다. 그래서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문제화 시켜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래서 비밀카메라로 6개월 간 한인 농장을 취재하여 코요테 잡아서 식용으로 하는 것을 개 잡아 먹는다고 왜곡시킨 화면을 허위 제보하여 TV에 방영시킨 일도 그런 맥락 중의 하나이다<sup>2)</sup>.

#### 5) 빈부 차별

서양인들이 개고기 먹는다고 한국인을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백인우월주의에 의한 인종차별인 경우가 많다. 개고기 식용은 하나의 구실로, 한국인이 개고기를 먹지 않았다면 다른 것을 이유로 인종차별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의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이 개고기 식용을 비난하는 것도 개고기나 먹는 사람들(가난한 사람들 = 야만인)과 자신들(부자들 = 문명인)의 차별화를 위해서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은 한국의 식용견을 보호하자고 하면서도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짜리 비싼 수입 개를 키우고 있으므로 논리에 맞지 않는다. 둘째, 한국의 개고기 식용은 전통이라는 수많은 문헌과 논문, 자료가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서양인들이 전통문화로 인정하지 못하게 부정하고 방해한다. 넷째, 애완견에는 수백만원씩 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업신여진다<sup>108)</sup>.

### 2. 개고기 식용에 대한 정책적 문제

#### 1) 주체성

한국의 개고기 식용은 선사시대부터 수많은 근거와 기록이 있고, 국민의 80%가 찬성하는데도 정부는 외국인과 일부 동물보호 관련 단체가 개고기 식용을 비난한다고 불법화시켜서 많은 문제를 만들었다.

다른 나라 사람이 항의한다고 보신탕집을 대도시에서 내쫓고 못 먹게 한 것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한국산 상품 불매 운동에 의한 수출 저하, 즉 경제우선주의 논리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나, 그 영향으로 한국산 상품의 수출이 얼마나 감소될 것인지 조사된 바도 없고, 연구한 사람도 없다. 한국산 상품의 수출량 저하는 근본적으로 상품의 질이나 마케팅 능력의 저하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지 개고기 문제 때문이라고 보기 힘들다. 개고기는 오래 전부터 먹어 온 전통이고, 지금도 먹고 있으므로 금지시키기 힘들어서 앞으로도 속 먹을 것이고, 개고기 식용 반대론도 존재하여 오던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도 돈보다는 자존심과 주권을 우선해야 하며, 자존심 때문에 전쟁을 한 역사도 수없이 많다. 남의 나라 사람이 개고기 먹는 것을 항의한다고 하여, 경제논리로 국민의 전통음식을 못 먹게 하는 나라는 없다.

정부나 개보호론자들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적 행사 때 손님으로 오는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인이 싫어하는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시끄러움을 자초할 필요 없고 국제적인 이미지가 실추하므로 개고기 논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외국인들이 싫어한다고 하여 개고기를 안 먹거나 감추거나 스스로 야만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월드컵 때 개고기 먹는다는 점을 당당하게 보여 주었어야 하며 그렇게 하였으면 한국의 개고기 식용에 대한 공격이 줄었을 것이다. 이것이 국가 위상을 높이는 최선의 전략이며, 한번 홍역을 겪으면 다시 더 겪지 않지만 감추고 쉬쉬하면 문제는 계속 남는다. 월드컵 참전차 한국에 온 외국인들 중에는 한국의 개고기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정부에서 쉬쉬하여 안내하는 곳조차 없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2) 통계 문제

상기 국민들의 개고기 식용의견에서 살펴보았다시피 국민의 80% 정도는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외국인들과 동물보호단체 및 국민 대다수가 개고기 식용을 반대한다’고 하여 축산물가공 처리법상에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키고, 올림픽 때는 도시에서 보신탕집을 못하게 하고 보신탕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상의 개고기 쇼핑몰 사이트도 폐쇄시켰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나 통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서구인들과 동물보호 관련단체가 한국이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지 않으면 한국산 상품의 불매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의 수출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피해를 줄 것인지 조사한 결과가 없다. 나아가 한국산 상품불매운동을 하는 단체와 그들에게 기부금을 내고 있는 세력들을 조사한 결과도 없다.

둘째, 인터넷을 통한 동물보호론자들의 여론 때문에 개고기 식용 합법화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국민의 의사는 물어본 적이 없다.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0%는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지만 보신탕집 주인, 건강원 주인, 개 사육자, 도축납품업자 등은 교육 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아서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인터넷 상에서 나타나는 여론이 국민의 여론을 모두 반영하거나 대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갤럽조사연구소 같이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연령별, 지역별, 성별, 교육 수준별 등으로 조사하여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데 그런 결과가 없다. 나아가 지금까지 정부는 개고기 식용을 항의하는 사람들 의 수와, 항의 건수를 공개한 적도 없다.

셋째, 한국에서 개를 때려잡는 방법(타살)은 없어진지 오래인데도 동물보호 관련 단체들은 개를 때려잡는 잔학하고 야만적인 나라라고 전세계에 허위로 광고하여 한국산 상품 불매운동과 월드컵 보이콧 등의 반한적인 일을 하므로 사법처리 대상인데도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

넷째, 농림부나 기타 정부 부서 산하에 소속된 동물보호 관련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모순을 갖는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이 한국산 상품을 불매하고, 월드컵을 보이콧하고, 한국인을 야만이라고 세계에 선전하고, 국회의원을 악마라고 세계에 욕하는 단체의 자금으로 쓰이게 되므로, 산하단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규모를 밝혀야 한다.

농림부가 국민의 의사와는 반대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동물보호주의자들의 반대’를 이유로 ‘개고기 식용 합법화 불가, 또는 반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살펴 본 바와 같이 명분이나 근거가 약하다. 그래서 농림부는 외세의 압력으로 개고기식용을 금지하려고 동물보호론자들을 앞세워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돌고 있다.

### 3) 식품위생문제

개의 사육과 도축, 판매는 감독이나 규제를 받지 않

지만 허가받은 위생적인 도축장에서 도축할 수도 없다. 그래서 개상인들이 알아서 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이 없고 건강한 개를 위생적으로 잡아서 위생적으로 보존하고, 위생적으로 유통시켜서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 그래서, 1998년 8월 5일의 보도에 따르면 세균 또는 바이러스 백신 실험에 사용되거나 폐렴 등 병들어 죽은 개 5,600 마리를 도축,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음식점과 건강원에 유통시킨 동물연구소 대표와 개고기 도매업자가 적발되었고<sup>110)</sup>, 1999년 12월 28일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물을 먹인 염소와 개 등 2백여마리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sup>111)</sup>.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개고기에 관한 한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위생시설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가진 도축장을 허가해야 해결할 수 있지만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므로, 개고기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전염병이 발생하면 법타령만 하고 있는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

### 4) 환경오염 문제

식용견은 한 마리에 30근(18kg) 정도이다. 도축하면 한 마리에 내장 3kg, 털 및 기타 합하여 4kg의 폐기물이 생기므로 한국의 식용견 1,420,046 마리는 연간 5,680톤의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6,949,870톤이며 그중 음식물 쓰레기는 4,173,410톤으로, 생활폐기물을 기준하면 도전폐기물 발생량은 0.034%, 음식물쓰레기를 기준하면 0.14%이다. 그러나, 도전장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므로 이들 폐기물은 대부분 쓰레기로 버려서 하천 등의 환경을 오염시킨다<sup>112)</sup>.

개로부터 발생하는 분뇨도 규제를 받지 않아서, 환경부는 2002년 7월 1일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개와 염소 등의 분뇨투기를 금지하도록 입법 예고하였다<sup>113)</sup>.

그러나, 개고기식용을 합법화하고, 각시도마다 도전장을 만들어서 환경오염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개를 도축하게 하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 남는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분뇨투기를 금지하는 것은 개가 축산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논리상, 경제적 여건상 무리한 적용이다. 즉, 소나 돼지, 닭은 가축이므로 축산진흥자금이나 기타 정책자금을 받아서 정화조 등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할 수 있지만 개는 가축이 아니라고 지원하지 않으면 환경오염방지 시설

을 갖추라는 것은 결국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하고,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탄압이 된다. 개 사육업은 다른 가축 사육업보다 영세하며 수입도 적기 때문에 정화 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농민은 매우 적다. 그리고,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개가 가축이 아니라 고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환경오염방지 법에서도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규제를 하려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가축으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해야 법논리상 형평성이 생긴다.

### 5) 세수 문제

현재는 개는 가축이 아니므로 도축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지 않으며 대부분 무허가 업자가 밀도살하고 있다. 합법화되면 이들에 대하여 세금을 부가하므로 세수가 증가된다. 도축세는 현재 소, 돼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정하는 시가의 1%를 도축세로 부과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연도의 도축세 세율을 10/100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축산물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합법화되어도 개고기 유통에 대한 세금은 없으나 세원이 드러나서 시세, 영업세 등의 세금이 늘어난다.

개상인들은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장사를 하여 이익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개고기 식용이 합법화되는 것을 싫어한다. 합법화되면 도축장을 짓는데 자금이 들어가고, 도축 수수료를 물어야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모든 과정에서 일일이 당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세원이 드러나서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십억 원의 현찰을 보유하여 로비력이 있는 개상인들도 있지만 합법화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개고기는 축산물이 아니라 계산서를 뗄 수가 없어서 보신탕업자들은 부가세를 내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 6) 농림부의 동물보호법 관할 문제

농림부는 축산농가를 위한 축산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외에 동물보호법도 관할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하는 데 우선을 두어야 하며, 농림부는 농민과 축산농가를 위한 부서이므로 성격상 동물보호와 거리가 멀다. 동물보호법은 멸종위기와 관계없는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오리, 닭, 산양, 면양, 사슴, 링크 기타' 등의 가축을 대상으로 하여 농민의 정상적인 축산활동을 규제하고 개고기 식용도 불법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가축은 축산

법과 축산물 가공처리법에서만 관리하고 동물보호법은 농림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시키고, 동물보호법에서 가축을 제외시켜서 이중 규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농림부는 산하에 동물보호 관련 단체를 두고 있는데 이들이 식용견 사육 농민과 식용견 소비자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그들의 주장만 받아들여서 개고기 식용 합법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체는 농민도 아니고, 축산 발전에 필요하지도 않으므로 이들의 편에 서서 농민의 권익을 제한하고, 농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는 것은 본분에서 벗어난 일이다. 그러므로 동물보호와 함께 그들 산하단체도 환경부로 이관시켜서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정부 스스로 조정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소원하여 환경부로 이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관된 동물보호법은 멸종대상인 동물의 보호만 다루도록 하고, 농림부는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시켜서 가축과 식용견을 키우는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분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 3. 해결책

한국의 개고기 식용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문화로, 수많은 고문헌과, 논문, 저서 등의 근거가 있는데도 정부는 개고기 식용을 불법화시켜서 문제를 발생시켰다. 정부는 개의 도살과 식용을 법으로 인정하고 사육에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양성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개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자니 외국인들의 비난이 신경쓰이고 강제적으로 금지하자니 국민들의 반발이 두렵기 때문이다.

대도시에서는 보신탕집을 못하게 하였지만 국민은 여전히 개고기를 즐기고 있고, 단속도 못 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국인이 비난한다고 하여 개고기를 못 먹게 하여도 국민이 개고기를 먹지 않을 것도 아니고 비난과 공격이 그칠 것도 아니다. 개고기 식용을 부끄러워하고, 비굴하게 숙이고, 미봉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자존심만 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 집 안방의 식탁까지 간섭하고 있고, 개고기 식용문제는 위생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고기 식용을 탄압하지 말고 합법화시켜서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보신탕집을 면단위 이하에서만 영업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없애야 한다. 둘째, 외국에서 개고기 식용을 중지하지 않으면 한국산 상품 불매운동

과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행사를 보이콧하겠다고 하여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할 수 없다는 비굴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셋째,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환경부 관할로 넘겨서 개고기 식용 반대에 앞장서는 동물보호론자들의 압력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넷째, 개고기 식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신뢰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다섯째, 한국의 독특한 문화인 개고기 음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전담 부서와, 연구소를 설립하고, 민간 기구도 지원하여 발족시켜야 한다. 여섯째, 이들 정책의 수립은 정부 부서나 동물보호 관련단체 등에 위임하면 어용적이고 작위적인 결과가 나오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일곱째, 개고기 식용을 불법화시킨다면 정부는 보신탕업자 1만여명, 건강원 업자 1만여명, 개사육자 8만여명, 개 상인 등 합계 10여만명, 이들의 가족까지 합쳐서 50만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여덟째, 애완견을 규제해야 한다. 애완견 산업의 발달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과 해를 입히는 일들이 많은데도 애완견 키우는 것을 인간적으로 보아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고 식용견만 문제삼는 것은 공공질서 유지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는 개고기 음식같이 가장 한국적인 것을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개고기 음식은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만 갖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요 약

한국의 개고기 식용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외국인들이 비난한다고 하여 축산물가 공처리법에서 개를 제외시켜서 개고기는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국민들의 개고기 식용 합법화요구에 행정부는 동물보호단체의 항의를 이유로 합법화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 80% 정도는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며,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법부는 국회의원이 20명이 개고기 식용 합법화 법안을 제출하였고, 사법부도 개고기를 식육이라고 판결하였다. 서구인들이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비난하는 내면에는 순수한 동물보호도 있지만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량 증가, 버린 개를 애완견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관심 돌리기, 동물보호 단체의 기금 모금 등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 동물보호 관련단체를 앞세워서 개고기 식

용 반대 여론을 호도하고,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관할하여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관련 단체의 편을 들고 있으나 이들 단체는 농민들이 아니다. 나아가 정부는 개고기 식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개고기 식용은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개도축 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시켜서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유통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국가의 자존심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환경부 관할로 넘겨서 멸종위기의 동물만 다루고, 정부는 개고기 식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개고기 음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전담 부서와, 연구소를 설립하고, 민간 기구도 지원하여 발족시켜야 한다. 개고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가장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1. 임종식: 개고기를 먹든 말든, 로뎀나무(2002)
2. 주강현: 개고기와 문화제국주의, 중앙M&B(2002)
3. 徐命膺: 改事新書(1771), 한국 전통의학 번역총서, 고사 활요, 중보산림경제, 고사신서,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 연구소편, 오름시스템(1994)
4. 徐命膺: 改事十二集, 正租11年(1787)
5. 魚叔權: 故事撮要(1554) 한국 전통의학 번역총서, 고사 활요, 중보산림경제, 고사신서,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편, 오름시스템(1994)
6. 憑虛閣李氏: 閨閣叢書(1815年頃)
7. 李基達: 農家月令(1800年代末)
8. 洪錫謨: 東國歲時記, 慶宗15年(1849)
9. 許浚: 東醫寶鑑(1613), 東醫學研究所譯, 東醫學研究所(1994)
10. 陶弘景: 名醫別錄(發行地 不明)
11. 斗庵老人: 民天集說, 英祖28年(1752), 純祖22年(1822)
12. 李時珍: 本草綱目(1578), 고문사 영인본(1985)
13. 憑虛閣李氏: 夫人必知(1915)
14. 姜希孟: 四時纂要抄(成宗, 1469~1494年)
15. 洪萬選: 山林經濟, 肅宗41(1715), 산림경제 1, 2, 고전국 역총서, 민족문화추진회, 민족문화문고 간행회(1982)
16. 이철완: 쉽게 보는 활인심방, 일중사(1993).
17. 孟詵: 食療本草, 620年代
18. 吳普: 神農本草經, 6世紀初, 醫道韓國社(1976)
19. 김일훈: 신약, 나무(1986)
20. 許浚: 謺解救急方, 宣祖40年(1607)

21. 金正中: 燕行錄, 正祖15年(1791)
22. 金蓮淳: 洪陽歲時記, 純祖19年(1819)
23.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1850年頃)
24. 園辛之卯整理儀軌, 正祖 19年(1795)
25. William Elliot Griffis: 隱者の 나라 韓國(1882년)
26. 石溪夫人安東張氏: 음식디미방(閨壺是議方), 肅宗代初(1670年頃)
27. 마빈해리스: 음식문화의 수수께끼, 서진영 옮김(1992)
28. 日華子: 日華諸家本草, 大明, 宋代開寶年間
29. 西有集: 林圓十六誌, 純祖27年(1827年)
30. 조선豆리협회: 자랑스런 민족음식 - 북한의 요리, 한마당(1989)
31. 摲者未詳: 木辛圓詩集(畜產篇), 哲宗年間(1849~1863)
32. 村田懋磨: 朝鮮の生活と文化, 東京 目白書院, 大正 13(1924年)
33. 村山智順: 朝鮮の郷土神祀(朝鮮總督府 調査資料), 朝鮮總督府(昭和12年, 1937)
34. 村山智順: 朝鮮の郷土娛樂(朝鮮總督府 調査資料), 朝鮮總督府, 昭和16年(1941)
35. Allen, H. N.: 朝鮮見聞記(1908)
36. 北川左人: 朝鮮固有色辭典, 京城ウサギ文庫, 昭和7年(1932)
37. Claude Charles Dallet: 朝鮮教會史 序論(1874)
38. 稲恒乙丙, 向坂幾三郎: 朝鮮農事示教, 大日本, 明治44年(1911)
39. 李用基: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永昌書館, 昭和18年(1943)
40. 崔南善: 朝鮮常識問答 墓續編, 東明社(1946~1948)
41. 張志淵: 朝鮮歲時記, 大正5~6年(1916~1917)
42. 方信榮: 朝鮮料理製法, 恒成堂(1942)
43. 洪善杓: 朝鮮料理學, 朝光社, 昭和15年(1940)
44.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英祖42年(1766) 한국 전통의학 번역총서, 고사활요, 증보산림경제, 고사신서,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편, 오토시스템(1994)
45. 吳儀洛: 增註本草從新, 文化圖書公司(民國 57年)
46. 李暉光: 芝峯類說, 光海君5年(1613)
47. 朴興生: 摠要新書, 高宗31年(1894)
48. 李盛雨: 韓國食經大典, 鄉文社(1981)
49. 李盛雨: 韓國食品文化史, 教文社(1992)
50. 尹瑞石: 韓國食品史研究, 新光出版社(1993)
51. 李盛雨: 韓國食品社會史, 教文社(1992)
52. 李盛雨: 韓國料理文化史, 教文社(1992)
53. 안용근: 한국인과 개고기, 효일문화사(2000)
54. 황혜성, 한복려, 한복진: 한국의 전통음식, 교문사(1989)
55. 서봉순, 윤은숙, 이진순, 김복자, 하순용: 한국조리, 지구문화사(1995)
56. 신동운,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들녘(1999)
57. 漢山居士: 漢陽歌, 憲宗10年(1844)
58. 徐浩修: 海東農書(1799年)
59. 崔永年: 海東竹技, 奬學社(1925年)
60. 박시사: 해외여행과 개고기, 자유출판사(1997)
61. 撲者未詳: 鄉里圓(歌辭)(朝鮮朝 末)
62. 정민성: 향약강좌, 선문출판사(1988)
63. 金孝統, 虛仲禮, 朴允德: 鄉藥集成方, 世祖15年(1433)
64. 李退溪: 活人心方(1400년대초)
65. 류병호: 한국산 재래종견의 영양학적 연구, 부산산업대학 논문집, 3, 485~494(1982)
66. 류병호: 개중탕 엑스분의 식품학적 가치에 관한 연구, 부산산업대학 논문집, 4, 137~143(1983)
67. 金京愛: 犬肉食用의 歷史와 개소주의 營養性分에 관한研究, 漢陽大學校碩士學位論文(1980)
68. 김숙희, 김화영, 이필자, 권도원, 김용옥: 체질의학의 체질 분류법에 따른 식품 기호도와 영양상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8(1985)
69. 김태홍: 견육요리의 연구- 문헌고찰, 한국식문화학회지 4, 347~356(1989)
70. 김태홍: 견육요리의 연구- 실태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4, 357~368(1989)
71. 김태홍, 유춘희, 홍희옥, 김희선: 견육식품의 관능적 특성과 소비자 기호도 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4, 369~374(1989)
72. 이성기, 한정희: 개고기의 저장증 지방산화에 관한 연구, 동물자원연구 9, 96~100(1998)
73. 안용근: 한국의 개고기 식용의 역사와 문화,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2, 387~396(1999)
74. 안용근: 한국의 개고기 음식에 대한 고찰,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2, 397~408(1999)
75. 안용근: 한국인의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인식,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3, 365~371(2000)
76. 안용근: 한국인의 개고기 음식에 대한 인식,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3 372~378 (2000)
77. 李盛雨: 韓國古食文獻集成集, 修學社(1992)
78. <http://www.chinapet.net/old/law>
79. 농림부: 기타 가축통계(2001)
80. 조선일보: 최초 도경장 백지화(1996. 12. 4)
81. 한미르: 전화번호 검색(<http://www.hanmir.com/>)
82. 한국일보: 개고기 음식점 업주들 뭉쳤다, 사회면(2002. 1. 11)
83.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1013(2001. 12)
84. 관세청: 고기수입절차, 민원질의 게시판 1556((2002. 8. 18))
85. 조선일보: 부산항 통한 밀수규모 대형화, 사회면(1996. 1. 18)
86. 조선일보: 농림부, 개고기식용 법제화 반대, 사회면 (1999. 9. 27)
87. 연합뉴스: 정부, 개고기 불법화추진, 사회면(1999. 5. 24)
88. 문화일보: 보신탕 판매방지 복지부 - 식약청 고소, 사회면(2002. 8. 16)
89. 조선일보: 정부, 개고기 비난 관련 잔혹행위등 단속, 사

- 회면(2001. 11. 29)
90. 조선일보: 동물학대방지법 제정 추진, 사회면(2002. 6. 30)
  91. 조선일보: 개고기 위생관리 두 부처 신경전, 사회면 (1999. 6. 20)
  92. 망치일보: '개고기는 혐오식품' 정부 종전입장 재확인 (1999. 9. 29)
  93. 조선일보: 개고기식용 합법화 법안 제출, 사회면(2001. 12. 28)
  94. 문화일보: '개고기도 식육' 서울지법 판결, 사회면(1996. 11. 21)
  95. 월간조선: 한국인의 의식주생활(2000년 1월호)
  96. 한겨레신문: 한국여성들 보신탕에 대하여 관대, 사회면 (1997. 7. 8)
  97. 한겨레신문: 애완개 식용개 구분하자 56% 찬성, 사회면 (1999. 5. 31)
  98. 사이버넷 온라인투표, ([http://www.kmib.co.kr/vpoll/vpoll\\_0818-0827/vpoll0827.html](http://www.kmib.co.kr/vpoll/vpoll_0818-0827/vpoll0827.html))
  99. Trend. 네티즌 생각- 개고기 유통 합법화 80% 찬성, ([ked.co.kr/keddy/trend8.24-1.htm](http://ked.co.kr/keddy/trend8.24-1.htm), 1999. 8. 24)
  100. 텔레서베이: 개고기유통 양성화 찬성 89.9%(1999. 6. 1)
  101. 한국일보: 개고기금지! 주권침해다, 사회면(2001. 11. 14)
  102. 개고기반대운동본부(<http://www.admh.org>)
  103. The petition team saves lives([enviroweb.org/ahtp/Korea\\_AnimalsHope.html](http://enviroweb.org/ahtp/Korea_AnimalsHope.html))
  104. 홍세화: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한겨레신문사 (1999)
  105. 조찬선: 기독교 죄악사, 평단문화사, 상, 하 (2000)
  106. 조선일보: 축산업 포기정책의 산물, 농업인 협동조합 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광고(1999. 7. 11)
  109. 한겨레저널: 미국선 개가 개고기 먹는다. 336호 (2002. 1. 16)
  110. 한국인과 개고기: 애완견 우월주의(<http://ok.ac.kr/~annyg/>)
  111. 중국에 부는 개고기 열풍(<http://hani.co.kr.section 7103/2/p7103208050905119.html>)
  112. 조선일보: 병든 개-실험용 개 5천여마리 보신탕-개소주집 공급, 사회면 (1998. 8. 5)
  113. 조선일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435명 적발, 사회면 (1999. 12. 28)
  114. 환경부: 음식물 쓰레기 관리정책 방향과 감량화, 자원화 실천사례(2001)
  115. 동아일보: 개-염소 분뇨도 하천방류 금지, 사회면(2002. 7. 1)

---

(2003년 1월 16일 접수)